

2020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0년 10월 16일 (금) 10:00

2. 장 소 : 법인사무국 회의실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3층 회의실)

3. 안 건 : 1)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정관 목적사업 변경(안) 승인 심의
2)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정관 기본재산 변경(안) 승인 심의
3) 기타 안건

4. 참석자 : 이사 6인 (여진숙, 김인찬, 이원호, 유인경, 최영준, 김상현 이사)

5. 사 회 : 대표이사 여진숙

6. 성원보고 :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이사 8인 중 6인이 참석하여,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제4차 이사회의 성원이 이루어져, 2020년 10월 16일 10시 5분 개회를
선언하다.

7. 전자회의록: 사무국에서 전자회의록을 보고하여 유인경 이사의 동의와 참석이사 전
원의 재청으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다.

- 의장: 사무국에서는 전자회의록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무국 : 전자회의록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 김상현 이사: 전자회의록 낭독은 회의자료의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
사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유인경 이사: 이번 이사회의 전자회의록 낭독은 서면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문
건으로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 참석이사전원: 재청합니다.
- 의장: 전자회의록 낭독은 유인경 이사의 동의와 참석이사 전원의 재청으로 유
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 안건상정: 법인사무국에서 안건상정을 하였으며, 추가 의안이 없어 안건을 결정하다.
- 1)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정관 목적사업 변경(안) 승인 심의
 - 2)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정관 기본재산 변경(안) 승인 심의
 - 3) 기타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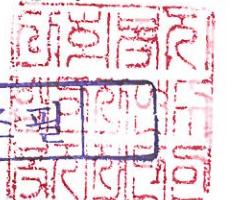
- 의장: 다음으로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금일 심의 안건은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정관 목적사업 변경(안) 승인 심의,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정관 기본재산 변경(안) 승인 심의의 건으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가할 의안이 있습니까?
- 참석이사전원: 없습니다.
- 의장: 참석 이사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언급된 안건을 2020년 제4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9. 안건심의

- 제1안건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정관 목적사업 변경(안) 승인 심의는 총 6명의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 의장: 본 법인의 정관 변경 심의의 건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무국: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변경안입니다. 현재 법인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바 정관 제1조(목적)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3항과 5항에 의거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정관의 목적 및 사업의 종류(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관 운영)를 제34조의 5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9항 및 11항의 ②에 의거하여 제4조(사업의종류)에 법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본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추가 및 변경하고자 합니



다. 2020년 7월 23일 제3차 긴급 법인이사회를 소집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 신청과 관련하여 법인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를 북구청 희망복지과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북구청 중회의실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 신청 발표 및 심의를 거쳐 2020년 8월 3일 최종 선정(북구 청 공고 희망복지과-3463호 2020. 8. 3.에 의거)되어 「아동복지법」 제 44조의 2에 따라 해당사업을 본 법인의 목적사업 내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법인 산하시설인 금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교실(금곡자연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 행	개 정(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사업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관 운영 2.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의 종류)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변경)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신설) 3.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설) 4.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현행과 같음)

- 의 장: 제1안건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정관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사님들 의견 주십시오.

- 이원호 이사: 법인에서 목적사업과 운영사업의 방향성이 일치하는바 정관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의장: 이원호 이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찬 이사: 법인의 산하기관이 확대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인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점차 다양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역량이 강화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전원: 삼청합니다.
- 의장: 제1안건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정관 목적사업 변경(안) 심의의 건은 이원호 이사의 동의와 김인찬 이사의 재청, 참석이사 전원의 삼청으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 제2안건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정관 기본재산 변경(안) 승인 심의는 총 6명의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 의장: 본 법인의 정관 기본재산 변경 심의의 건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 인 사 무 국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근거하여 본 법인의 기본재산(토지공시지가)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 3건의 기본재산 변동에 대한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대지)의 평가가액은 기존 일십삼억사백팔십팔만육천원(1,304,886,000) 대비 오억삼천사백삼만삼천원(534,033,000) 증가한 일십팔억삼천팔백구십일만구천원(1,838,919,000)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토지(전)의 평가가액은 기존 일백오만오천원(1,055,000) 대비 육십일만사천원(614,000) 증가한 일백육십육만구천원(1,669,000)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토지(임야)의 평가가액은 기존 삼백이십구만육천원(3,296,000) 대비 일백구십일만사천원(1,914,000) 증가한 오백이십일만원(5,210,0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부동산(토지)

변경 전(2013)						변경 후(2020)					
구분	목록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비고	구분	목록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비고
목적 사업용	건물	부산광역시 북구 효자동 144(금곡동)	1,407.59㎡	1,266,065,000원	취득 원가	2013년 개별 공시 지가로 산출	목적 사업용	부산광역시 북구 효자동 144(금곡동)	1,407.59㎡	1,266,065,000원	취득 원가
	토지 (대지)	부산광역시 북구 효자동 144(금곡동)	1,980.10㎡	1,304,886,000원			토지 (대지)	부산광역시 북구 효자동 144(금곡동)	1,980.10㎡	1,838,919,000원	
	토지 (전)	부산광역시 북구 효자동 144(금곡동)	235.00㎡	1,055,000원			토지 (전)	부산광역시 북구 효자동 144(금곡동)	235.00㎡	1,669,000원	2020년 개별 공시 지가로 산출
	토지 (임야)	부산광역시 북구 효자동 144(금곡동)	843.00㎡	3,296,000원			토지 (임야)	부산광역시 북구 효자동 144(금곡동)	843.00㎡	5,210,000원	
소계	-	-	4,465.69㎡	2,575,302,000원	-	소계	-	-	4,465.69㎡	3,111,863,000원	-
수익 사업용	건물	(해당)	사항	없음	-	수익 사업용	건물	(해당)	사항	없음	-
소계	-	-	-	-	-	소계	-	-	-	-	-
합계	-	-	4,465.69㎡	2,575,302,000원	-	합계	-	-	4,465.69㎡	3,111,863,000원	-

- 의장: 제2안건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정관 기본재산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사님들 의견 주십시오.
- 김인찬 이사: 법인의 기본재산이 가액변동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해당안건에 대해 동의합니다.
- 의장: 김인찬 이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전원: 재청합니다.
- 의장: 제2안건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정관 기본재산 변경(안) 심의의 건은 김인찬 이사의 동의와 참석이사 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기타 안건 있습니까?
- 참석이사전원: 없습니다.
- 의장: 법인 및 산하기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10월 16일 10시 50분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2020년 제4차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이사회 회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2020년 10월 16일

원본 대조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여 진 숙



이 사 김 인 찬



이 사 이 원 호



이 사 유 인 경



이 사 최 영 준



이 사 김 상 현

